



# 규정

## 유니테크 운영위원회 시행 세칙

문서번호	TWI-A612		
제정일자	2016. 08. 05.		
개정일자			
개정번호	0	페이지	1/3


### 목 차

- 제1조 목적
- 제2조 구성
- 제3조 기능
- 제4조 회의소집 및 의결
- 제5조 회의록
- 제6조 수당 등의 지급
- 제7조 기타사항
- 부칙

작성부서	유니테크사업단	제정일자	2016.08.05.
------	---------	------	-------------

구 분	작 성	검 토			승 인
직 책	담당	팀장	센터장	유니테크사업단장	총 장
서 명					
일 자					



	<b>규정</b>	문서번호	TWI-A612	
		제정일자	2016. 08. 05.	
	<b>유니테크 운영위원회 시행 세칙</b>	개정일자		
		개정번호	0	페이지

**제1조(목적)** 본 위원회는 동원대학교 공동훈련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가 수행하는 제반업무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한다.

**제2조(구성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산·학·관 전문가를 포함하여 15인 내외로 구성한다.  
 ② 위원장은 사업단장으로 하고 위원장의 추천으로 위원은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**제3조(기능)**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센터 운영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
2. 센터 예산 편성 및 결산심의에 관한 사항
3. 센터 사업신청, 평가 및 사업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
4.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


**제4조(회의 소집 및 의결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  
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 
 ③ 위원장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  
 ④ 서면에 의한 운영위원회 회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도로 운영되어야 하며, 이 경우 위원장은 서면에 의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사유를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에게 알려야 한다.

**제5조(회의록)**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회의의 개최일시, 장소, 참석자 명단, 회의에서의 참석자 발언내용,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  
 ② 작성된 회의록은 다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의 보고 및 확인을 거쳐 사무실에 보존한다.

**제6조(수당 등의 지급)**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**제7조(기타사항)** 위원회 관련사항이 미비한 사항은 취업보장형 고교·전문대 통합교육육성 사업(Uni-Tech)운영 규정을 따른다.

부칙

	<b>규정</b>	문서번호	TWI-A612	
		제정일자	2016. 08. 05.	
	<b>유니테크 운영위원회 시행 세칙</b>	개정일자		
		개정번호	0	페이지

1. (시행일)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